

---

---

## 목 차

---

---

### 입법조사처

1. 현행 북한과 중국의 서해 해양경계 실태와 문제점
  - 1) 현행 북한과 중국의 서해 해양경계 실태
  - 2) 문제점
2. 한, 중 서해 해양경계 획정 협상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
  - 1) 한, 중 어업협정의 연혁
  - 2) 한, 중 어업협정의 개요
  - 3) 재협상 주기
3. 남북통일시 예상되는 통일한국과 중국의 서해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 검토 및 외교적 대응방안
  - 1) 통일한국과 중국의 서해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 검토
  - 2) 외교적 대응방안

### 도서관

1. 한, 중 어업분쟁
2. 한, 중 어업협정
3. 한, 중 해양경계 관련 사건
4. 한, 중 해양경계 획정 및 어업분쟁관련 신문기사



# 통일대비 대 중국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요 약

### 질의 요지

#### 통일대비 대 중국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1. 현행 북한과 중국의 서해 해양경계 실태와 문제점
2. 한·중 서해 해양경계 획정 협상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
3. 남북통일시 예상되는 통일한국과 중국의 서해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 검토 및 외교적 대응방안

(회답일 2012.09.21)

#### ■ 조사·분석 방향

- 관련 문헌 조사

#### ■ 주요내용

- 현행 북한과 중국의 서해 해양경계 실태
  - 중국과 북한 간에는 아직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어업협정도 없음
  - 양국간 서해상에서의 잠정적 경계선은 1962년에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국경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영해 기점을 수직으로 연장한 선임
- 문제점
  - 북·중간 사실상의 해양경계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나열된 등거리선 원칙, 형평의 원칙, 당사국간 합의, 자연연장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음
  - 통일한국이 현재 북·중간 사실상의 해양경계 또는 장차 체결될 해양경계협정을 승계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 한·중 서해 해양경계 획정 협상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
  - 한·중 서해 해양경계 획정은 궁극적으로는 관련국간 EEZ 경계획정을 통해

### 해결될 것임

- 현재 한·중간 주변 해양은 양국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통일한국과 중국의 서해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 검토
  -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승계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 선례의 발달이나 학설의 논의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남북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현재 북·중간 사실상의 해양경계 또는 장차 체결될 해양경계협정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한·중간 외교적 마찰이 예상됨
- 외교적 대응방안
  - 조약승계협약이 남북통일 시 해양경계의 승계에 대한 법원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외교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통일 한국은 북·중간 사실상의 해양경계 또는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해양경계협정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가능함
  -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해양에 대한 관할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에 불과할 뿐, 이러한 선언만으로 해양에 대한 관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님

## 1. 현행 북한과 중국의 서해 해양경계 실태와 문제점

### 1) 현행 북한과 중국의 서해 해양경계 실태

- 중국과 북한 간에는 아직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어업 협정도 없음
  
- 양국간 서해상에서의 잠정적 경계선은 1962년에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 사이에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국경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영해 기점을 수직으로 연장한 선임
  - 이 조약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 기점을 압록강 하구의 동경 124도10분6초로 정하고 있음
  - 이곳에서부터 북위 39도31분51초까지만 영해 개념이 적용됨
  - 북·중 양국은 이 조약에서 동경 123도59분26초~124도26분 사이의 '자유 통행 수역'도 설정했음
  - 중국은 이 조약을 근거로, 동경 124도에서 아래로 쭉 내려 그은 선을 중북간의 잠정적 '해양경계선'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 정부는 어선들이 서해 동경 124도 선을 넘지 않도록 지도해 왔으며 북한도 이를 양해한 것이 관행이었다고 함

[그림 1] 북·중 서해 해양경계선



출처: 「중, 자국에 유리한 ‘동경 124도 (1962년 북·중이 맺은 영해 기점) 해양경계선’ 50년째 근거 없이 적용», <<http://blog.daum.net/baba1905/2323265>> (2012년 9월 21일 최종 방문)

## 2) 문제점

- 북한은 이러한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하여 15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7년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서 이의 제기를 시작. 2012년 5월 8일 북한이 123도 57분, 북위 38도 05분 해역에 있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적의 소속 선박 3척을 나포했다가 5월 13일 풀어주었음
- 북한의 입장 (추측):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나열된 등거리선 원칙, 형평의 원칙, 당사국간 합의, 자연연장의 원칙 등에 따라 중국과 해양경계선 획정
- 통일한국이 현재 북·중간 사실상의 해양경계 또는 장차 체결된 해양경계협정을 승계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 2. 한·중 서해 해양경계 획정 협상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

- 한·중 서해 해양경계 획정은 궁극적으로는 관련국간 EEZ 경계획정을 통해 해결 될 것임
- 현재 한·중간 주변 해양은 양국간 체결된 어업협정(한·중 어업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1) 한·중 어업협정의 연혁

-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를 도입함
  - 한·중 양국도 EEZ 경계 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협정으로서 어업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음
- 서해 및 남해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 억제를 통하여 자원고갈 방지 및 우리 어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중간 어업질서 수립이 필요함
- 협정 체결경위
  - 1993. 12. ~ 1998. 11. 한·중 어업실무자회의 개최(19회)
  - 1998. 10. ~ 2000. 12. 한·중 수산당국간회담 개최(10회)
  - 2000. 8. 3. 협정 서명(북경)
  - 2001. 2. 28. 국회 비준(제218회 임시국회)
  - 2001. 6. 30. 협정 발효

### 2) 한·중 어업협정의 개요

- 한·중 어업협정의 주요내용
  - 본문(16개 조항)과 2개의 부속서 및 양해각서로 구성됨
  - EEZ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협정(제1조)
    - EEZ는 영해 외측에 있으므로 영해는 어업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됨

- 협정수역을 4개 종류의 구역(EEZ, 잠정조치구역, 과도구역, 현행조업질서유지구역)으로 구분, 각 구역별로 차등화된 어업관리를 시행함(제6조 내지 제9조)
- 어업문제에만 적용되는 협정(협정 제14조)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법상의 제반 사안에 관한 각 계약당사자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어업수역의 구획 및 각 구역의 성격

- EEZ: 연안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함
- 잠정조치구역: 공동어로 및 공동규제가 이루어짐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공동 관리 및 보존조치를 실시함
- 과도구역: 협정 발표 이후 4년 뒤에 연안국의 EEZ로 편입됨
  - 2005년 이후 연안국의 EEZ로 편입
- 현행조업질서유지구역: 현행의 어업질서를 유지함

3) 재협상 주기

□ 한·중 어업협정상 정해진 재협상 주기는 없음

- 2006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양국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한·중 어업협정에 대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음
  - 한·중 어업협정 제16조 제3항은 “일방계약당사자는 타방계약당사자에게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최초 5년 기한의 만료 시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3. 남북통일시 예상되는 통일한국과 중국의 서해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 검토 및 외교적 대응방안

#### 1) 통일한국과 중국의 서해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 검토

- 통일한국이 현재 북·중간 사실상의 해양경계 또는 장차 체결될 해양경계협정을 승계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영해는 영토와 마찬가지로 그 경계협정에 대하여 승계의무가 발생하고,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하여는 아직 국제적 선례의 발달이나 학설의 논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다만 1989년 Guinea-Bissau v. Senegal 중재재판에서는 국경승계의 법리와 *우티 포시데티스(uti possidetis)* 원칙<sup>1)</sup>이 대륙붕 경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판정이 내려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칙은 국경선과 영해의 경계선에만 적용가능하고,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 2) 외교적 대응방안

- 조약승계협약이 남북통일 시 해양경계의 승계에 대한 법원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외교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조약승계협약은 남북한 모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음
  - 조약승계협약의 내용은 국경조약의 승계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표적인 분단국 통합사례인 예멘과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기존의 국경조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음 → 국가의 실행을 보건대 국제관습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관행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1) 일반적으로 식민지독립으로 새로 탄생한 국가가 식민지 때의 영토의 범위를 자신의 국경선으로 받아들이는 것

- 국제법상 조약승계문제의 해결 = 자발적 승계에 의한 해결
  - 확립된 국제법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
- 따라서 통일 한국은 북·중간 사실상의 해양경계 또는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해양경계협정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가능함 → 이러한 선언은 해양에 대한 관할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에 불과할 뿐, 이러한 선언만으로 해양에 대한 관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님

※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 1978년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에 관한 협약」 제11조와 제12조

① 국가승계의 유형과 상관없이 승계가 1) 조약에 의하여 수립된 국경과 2) 조약에 의하여 수립된 국경제도와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제11조)

② 영역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조약 역시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음(제12조)

# 한·중 해양경계 획정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  
정치행정2담당 이 은 숙

국 회 도 서 관 장



# 1. 한·중 어업분쟁

## 가. 근대

- 근대에 편입되면서 조선의 바다는 열강이 세력을 다투는 분쟁의 장이 되었으며, 당시의 국제적 분쟁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어업분쟁임. 조선은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대한 부의 원천을 열강에게 침탈당하고 있었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청과 일본임
- 조·청간의 어업분쟁은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국제적인 외교문제로 발전하였고, 근대 이후의 어업분쟁은 그 연장선에 있었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도 진행 중임<sup>2)</sup>

조·청 어업분쟁의 전개과정<sup>3)</sup>

단계	기간		성격
	연도	내용	
제1기	1684~1842	강희 23년의 '개해금(開海禁)' ~	전통시대의 불법어업 시기
제2기	1842~1882	남경조약 ~	해금체제 붕괴 이후의 불법어업 시기
제3기	1882~1894	조청무역장정 ~	합법적 어업활동과 일본과의 경쟁 시기
제4기	1894~1910	청일전쟁~일제강점	일본의 우위권 확립과 밀어(密魚) 시기

자료 : 김문기. (2008).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 분쟁 : 1882년 '조청무역장정' 체결 이전까지.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90.

## 나. 현대

- 한·중 어업협정(2000년 서명, 2001년 발효) 이후에도 중국어선은 우리수역에 침범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음

2) 김문기. (2009). 기후, 바다, 어업분쟁 : 1882-1910년간 조·청어업분쟁의 전개. 중국사연구, 제63집, 67-68.  
 3) 조·청 어업분쟁 전개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문기. (2008).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 분쟁 : 1882년 '조청무역장정' 체결 이전까지.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86-141.'와 '김문기. (2009). 기후, 바다, 어업분쟁 : 1882-1910년간 조·청어업분쟁의 전개. 중국사연구, 제63집, 67-120.'을 참고하기 바람

- 그러나 위반 유형이 무허가 조업보다는 제한조건 위반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중대 위반(무허가 조업, 폭력저항 등)과 달리 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하지 않고, 나포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담보금을 납부하는 경우 현장에서 석방하는 제도를 시행함

현장 조사제 결과 : 2009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나포 척수	8	33	40	37	36	1	2	2	14	72	62	74	559
현장조사 척수	1	5	11	14	5	-	-	-	1	11	36	26	138
현장조사 실시율(%)	12.5	15.2	27.5	37.8	13.9	-	-	-	7.1	15.2	58.1	35.1	24.6%
	28.9% (381척 나포/ 110척 현장조사)												

자료 : 해양경찰청. (2010). 2010 해양경찰백서, 193.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발효(한·일 : 1999년, 한·중 : 2001) 이후 외국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들이 어업협정을 위반하여 나포되는 사례 또한 종종 발생함<sup>4)</sup>

4) 해양경찰청. (2011). 2011 해양경찰백서, 211.  
해양경찰청. (2010). 2010 해양경찰백서, 192.

## 우리어선 외국수역 불법조업 나포 현황

(단위 : 척, 만 원)

구분 연도	일본		중국		러시아	
	척수	벌금	척수	벌금	척수	벌금
계	83	83,817	2	520	1	1,800
2010	13	15,447	-	-	-	-
2009	12	7,587	-	-	-	-
2008	18	14,455	-	-	-	-
2007	15	7,515	1	(경고)	-	-
2006	10	10,463	1	520	-	-
2005	15	28,350	-	-	1	1,800

자료 : 해양경찰청. (2011). 2011 해양경찰백서, 214.

### 2. 한·중 어업협정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관하여 중국의 관계당국의 항의 및 자제조치를 수차례 요청하는 한편 1993년 10월, 북경에서 열린 한·중 외무장관회담에서 어업실무회담개최를 제의함
  
- 이후 수차례 회담을 거쳐 2000년 8월 3일 협정을 정식으로 서명하고, 2001년 6월 30일 정식으로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됨

#### 한·중 어업협정 주요 체결경위

날짜	체결경위
1993년 12월 제1차 어업실무회담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체제 도입, 어업수역의 경계획정, 어업질서 유지, 어선의 해난사고 처리 및 어선긴급피난 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
1994년 6월 제2차 어업실무회담	한국 : 양국의 영해 외측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중국 : 영해외측수역 모두를 공동어로수역으로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서 어업전관수역


날짜	체결경위
	설정문제를 다루자고 주장
1996년 12월 제7차 어업실무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확정과 어업협정 문제를 서로 분리하고 어업협정을 조기에 타결하자는 원칙에 합의함</li> <li>- 어업수역 확정문제를 중점으로 구체적인 협정 문안 토의</li> </ul>
1997년 9월 제11차 어업실무회담	어업전관수역 외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
1998년 6월 제15차 어업실무회담	협상 대상수역을 제주도 남부수역과 동중국해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1998년 8월 제17차 어업실무회담	어업전관수역 및 잠정조치수역과는 별도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수역에 과도수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1998년 11월 제19차 어업실무회담	배타적 경제수역, 과도수역, 잠정조치수역의 설정범위 합의
1999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의 정식서명을 위한 후속조치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경 정식으로 서명하기로 합의함</li> <li>- 그러나 중국이 양자강 연안에 가서명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연중 조업금지수역을 설치하고, 이를 우리 측에 준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예정된 정식서명이 무기한 연기됨</li> </ul>
1999년 6월	양자강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회담 개최
2000년 5월	양자강 수역에서 우리어선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조업금지를 유예하는 대안을 제시함
2000년 8월 3일	양국은 협정발효 이후 2년간 양자가 금지수역 관련법령을 우리 어선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타결하여 협정을 정식으로 서명함
2001년 6월 30일	어종별 입어교섭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정식으로 발효됨

주 : 아래 자료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자료 : 최경문. (2009). 해양경계확정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주변 수역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62-64.


### 3. 한·중 서해 해양경계 관련 사건<sup>5)</sup>



5) 한·중 서해 해양경계 확정 및 어업분쟁과 관련하여 사건 또는 일자별로 정리된 자료(일지 등)가 검색되지 않아 참고자료로 한·중 서해 해양경계 확정 및 어업분쟁 관련 신문기사를 제공함

○ 한·중 서해 해양경계 확정 및 어업분쟁 관련 신문기사 

4. 한·중 해양경계 관련 자료6)

자료명 / 저자 / 발행사항	원문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 : 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 서인범 / 明清史研究 = Journal of Ming-Qing historical studies. 제36집 (2011. 10) pp.347-386	국회도서관 원문
잊혀진 해양영토, 제7광구!! : 국내 대륙붕 해저광구의 석유자원 개발의 문제점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이진복 주최, 2011 ■ 3. 서해 및 동중국해 대륙붕의 변계 설정과 법적 권원 귀속의 문제 (2) 한중(韓中) 간 서해 및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 설정 문제	
한·중 간 이어도海領有權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 송성대 /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통권 138호 (2010년 6월) pp.414-429	국회도서관 원문
중외조약을 통해 본 근대 중국의 해양경계 : 국경조약과 조차조약을 중심으로 / 조세현 / 역사와 경계=History & the boundaries. 제74집 (2010. 3) pp.251-290	
조선후기 해양경계(海洋境界)와 해금(海禁) / 韓任善 ; 申明鎬 / 동북아문화연구. 제21집 (2009. 12) pp.5-19	국회도서관 원문
氣候, 바다, 漁業紛爭 : 1882-1910年間 朝·淸漁業紛爭의 展開 / 金文基 / 中國史研究. 제63집 (2009.12) pp.67-120	5층 정간실
한중해양 경계획정 문제 : 이어도를 중심으로 / 강효백 / 한국동북아논총. 제14권 제1호 통권50집 (2009년 3월) pp.85-107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주변 수역 중심으로 / 최경문 /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902 ■ 제3장 한반도 주변의 해양경계획정 제1절 한국-중국간 해양경계 획정	
해양인식의 확대와 해양사 / 姜鳳龍 / 歷史學報. 제200집 (2008. 12) pp.67-97	국회도서관 원문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 이근우 [외] 지음 ; 동북아역사재단 [편] / 동북아역사재단, 2008 ■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 분쟁 : 1882년 ‘조청무역장정’ 체결 이전까지 / 김문기 ( 청구기호 : 327.5 ㄷ328ㄱ )	1층 대출대
우리나라와 중국간 해양경계 획정 / 李錫龍 / 國際法學會論叢. 제52권 제2호 통권 제108호 (2007년 8월) pp.259-283	

6) 원문 중 은 국회 내에서만 원문보기가 가능함

자료명 / 저자 / 발행사항	원문
<p>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 이문기 [외] 지음 / 동북아역사재단, 2007</p> <p>■ 조선 후기 해금정책의 내용과 성격 / 우인수 청조 해금정책의 성격 / 홍성구 ( 청구기호 : 327.5 ㅎ164 )</p>	1층 대출대
<p>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 한반도를 중심으로 / 진용기 /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308</p> <p>■ 제3장 한반도 주변의 해양경계획정 제1절 한반도 주변국의 해양정세 1. 한국 3. 중국 제2절 한반도 주변의 해양경계획정 재조명 2. 한·중간 어업협정 가. 배타적 경제수역 나. 잠정조치수역 다. 과도수역 라. 어업공동위원회 및 어업협정 유효기간</p>	국회도서관 원문
<p>한-중어업관계의 전개와 협력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 해양수산부, 2002</p> <p>■ 제2장 한-중 어업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3장 한-중어업협정의 해석과 시행 제4장 중국의 해양·수산정책과 어업관리제도</p>	국회도서관 원문
<p>우리나라의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考察 ; 黃·東支那海를 중심으로 / 李錫龍 / 해양정책연구. 4,1('89.4) pp.1-21</p> <p>■ IV. 중국 및 일본과의 경계획정</p>	국회도서관 원문
<p>韓國과 經濟水域의 問題 / 朴稚榮 / 國際法學會論叢. 64('88.12) pp.219-232</p> <p>■ III.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p>	
<p>국제법상 경제수역 제도에 관한 고찰: 한반도주변의 경제수역설정을 중심으로 / 韓溶昌 /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8308</p> <p>■ 제5장 황·동지나해 경제수역 경계획정 2. 각국의 입장</p>	
<p>韓國漁業史 / 朴九秉 著 / 正音社, 1975</p> <p>■ 제5장 조선시대의 어업 제8절 조선 후기의 청인의 불법 어로 1. 청인의 밀어 2. 청 어민의 불법 행위 ( 청구기호 : I 639.0951 ㅂ135ㅎ )</p>	독도 통일 자료실

---

**한·중 서해 해양경계 획정 및 어업분쟁 관련  
신문기사**

---



▶ 아시아투데이 [2012.01.06] 중국 "한국, 불법 조업에도 무기 사용하지 마"

중국 외교부의 아시아 담당 핵심 당국자가 한국 측에게 중국의 불법 조업을 하는 어민에게 무조건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화시보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아주사 뤼자오후이 사장은 전날 "한국이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할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 대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경 대원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 후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총기 사용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무기 사용의 완전한 금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쓰지 말라는 뤼 사장의 발언은 치안 질서 유지권이라는 타국의 핵심 주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로여서 고위 외교 당국자의 말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동아일보 [2012.01.10] 불법조업 담보금 못낸 中어선, 올 들어 첫 몰수

서해어업관리단은 담보금을 내지 못해 몰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전남 목포시 산정동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계류해 놓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제공서해바다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에 물리는 담보금을 올린 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오른 담보금을 내지 못해 배와 어구를 몰수당하거나 붙잡혀 있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 19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124km EEZ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이 담보금 8000만 원을 내지 못해 선박과 어구를 몰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선장 우모 씨(38)는 담보금을 내지 못해 구속됐다. 30t급인 이 어선은 중국 랴오닝 성 다롄 시 선적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어구를 몰수하는 것은 2009년 목포 해경이 중국 목선을 몰수한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 어선은 현재 전남 목포시 산정동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계류돼 있다. 한두 달 안에 법원의 선고를 받아 배를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몰수한 뒤 폐기하면 추가 불법조업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어선을 폐기하는 데 목선은 최고 1000만 원까지 드는 등 위탁관리와 폐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 1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올린 이후 담보금을 내는 기간이 평균 1일에서 2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더라도 즉시 담보금을 내고 또다시 불법조업에 나서는 악순환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72척(무허가 40척)을 나포해 담보금 39억3900만 원을 추징했다. 올해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25척(무허가 4척)을 붙잡아 담보금 6억 원을 부과해 4억7000만 원을 받아냈다. 부과금액이 큰 무허가 조업 담보금이 지난해 척당 55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척당 70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담보금 상향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단속이 이뤄져야 정확한 인상 효과를 추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상습적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고 2억 원으로 올리거나 어획물, 어구를 몰수하는 방안은 일명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 세계일보 [2012.01.11] 한·중 해양경계 획정협상 추진

한국과 중국은 10일 해양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비롯한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교장관 간 직통전화 핫라인, 외교당국의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중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틀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면담을 마친 뒤 10일 ‘한·중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양경계 획정 협상은 중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어도 영유권 주장을 잠재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의 무대가 될 소지도 있다. 한·중은 또 어업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어업질서의 공동수호,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협력과 소통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원 총리와 면담, 만찬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원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하고 자세를 유지한 데 높이 평가하고 남북관계가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한 데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원 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 “한국의 협상 개시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같이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아시아투데이 [2012.02.05] 中, ‘불법조업어선 조치사항’ 공한 보내

중국 정부가 지난달 18일 우리 측에 해경 순직사건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조치사항을 전달해 온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국 농업부에서 주중한국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지난해 12월 해경 순직사건 이후 조치사항을 전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측은 △긴급실무팀 파견 후 조사감독 강화 △각 지역 어업 당국에 어선 관리감독 강화 지시 △해상순항 및 항구조사 강화 △중대사항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중국 농업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장급이 인솔하는 2개 조사감독팀을 각각 랴오닝성(遼寧省), 산둥성(山東省)으로 파견해 지도감독 업무 및 어선 통제관리·어민 지도교육을 강화할 것을 각 지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이후 중점해역의 순항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매일 최소 2척의 어업지도선이 한국 측 특정금지구역 서측해역에서 24시간 순항하고 있다”고 우리 측에 전해왔다.

특정금지구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상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해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아울러 무허가조업, 한국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가지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측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5일 한국 해경에 의해 나포된 무허가조업 협의 어선 3척을 인계받은 후 같은 달 31일 어구 및 어획물을 몰수하고 각각 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 조치로 제안한 ‘한중 상설 고위급 협의체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해경을 살해한 중국 어선들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설 협의체 설치에 중국 측이 곧바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조만간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상설 협의체 설치에) 중국 측이 동의해 온다면 굳이 고위급이 아니더라도 실리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시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양국 해양분야 협력 촉진을 위해 외교·어업 등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대화와 협의를 가동시키도록 적극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 국민일보 [2012.03.03] 제주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 압송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 다롄(大連)선적 쌍끌이 어선인 요보어25013호(175t·선장 장모씨·39)는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72km(우리측 EEZ 내측 77.7km) 해상에서 새우 등 약 3430kg을 어획하고 조업일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제주해경은 앞서 2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4km(우리측 EEZ 내 3.7km) 해상에서 조기 등 2860kg 상당을 어획한 중국 단둥(丹東)선적 쌍끌이 어선인 요단어 25046호(120t·선장 송모씨·30)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제주해경은 이들 중국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 동아일보 [2012.03.08] 한중 고위당국자, 불법조업 中어선 관련 ‘용어’ 언쟁

중국 당국이 한국의 정당한 법 집행인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비문명적(uncivilize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단속과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7일 드러났다.

최근 중국 외교부 고위 인사를 만나 불법 조업 문제를 협의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비문명적이라는 표현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측 인사는 “중국에서 ‘비문명적’이라는 말은 ‘폭력적’ 같은 용어보다 순화된 것이어서 공식 석상에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중국 당국이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간 문화와 뉘앙스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모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어이니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 인사는 “관련 부처와 그 문제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이청호 경장이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순직한 이후 단속 현장에서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후 중국은 한국에 총기 사용 중지를 요구하면서 언론을 통해 한국의 불법 조업 단속이 ‘폭력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비문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총기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곤봉을 사용한 진압 등 모든 무력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명적’이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선진적, 과학적, 비폭력적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덧붙였다.

### ▶ 경향신문 [2012.03.13] 제주 해군기지 /‘이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해양경계의 문제다

- 보수세력이 앞장서 중국발언 확대 해석, 영유권 분쟁 몰아가

제주도 남서쪽 해상의 수중암초 이어도가 느닷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감시선·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되는 해양권역을 밝힌 게 뒤늦게 논란이 된 것이다. 류 국장은 이 권역이 북쪽으로 압록강 하구, 동쪽으로는 오키나와 해구, 남쪽으로는 난사군도 제임스사주(중국명 정무안사·曾母暗沙)에 이르며, 센카쿠열도(중국명 닌오위다오·釣漁島)와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도를 중국의 순찰권역에 포함시켰다는 중국 당국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뒤 한·중 간 외교적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중국이 마련했다는 ‘법을 집행하는 체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2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실무자를 외교부로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이 실무자는 아직 본국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 담당자는 중국 측에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확정 전이라도 이어도는 한국 측 수역”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국가해양국장이 전인대에 참석해 인터뷰를 하다 보니 국의 업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 모든 자원에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 수역이다.

이어도는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81해리(149km), 중국 최동단 퉁다오(童島)에서 133해리(245km) 떨어져 있는 수중암초이다. 국토해양부가 2003년 이어도에 준공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가 해수면에서 4.6m가량 잠긴 수중암초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해양법상으로 영토분쟁 대상이 아니라 해양경계 획정의 대상이다. 200해리 EEZ 원칙에 따라 경계를 정해야 하지만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는 그 정도로 넓지 않아 양측의 EEZ가 겹치게 된다. 따라서 협의를 통해 경계선을 찾아야 한다.

한국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면 이어도는 한국 쪽에 속한다고 하는 반면 중국 측은 대륙붕 퇴적물, 중국의 긴 해안선 등을 감안해 경계를 이어도 동쪽에 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국은 2008년 11월까지 14차례 해양경계 획정 협의를 벌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중국은 2009년 5월 외교부 내에 변계해양사(邊界海洋司)를 별도 기구로 설치하고 중국 주변 해양경계 분쟁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왔지만 그 후로 15차 한·중 협의에는 아직 응하지 않았다. 센카쿠열도, 난사군도 등 다른 분쟁 해역들에 비해 이어도 주변해역은 잠잠한 편이었지만 한국 내 극우 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제2의 독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이성적 논란의 징표를 보여주는 사례는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암초”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일이다. 심 공동대표는 지난 7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남방해역의 군사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지만, 건국 이래 남방해역에는 그 어떤 분쟁도 없었다”며 이어도가 수중암초라고 말했다. 이어도를 한·중 간의 분쟁지역으로 만들며 제주 해군기지 추진론에 활용하는 보수진영에 대한 반론이었다. 12일 트위터 등에는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 발언’ ‘고대녀의 해적 망발보다 더 심각’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이를 지켜본 외교부 당국자는 한숨을 지었다.“전체적으로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동남아 지역이 해양경계 문제로 민감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 이어도 문제는 기술적인 경계획정을 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이렇게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문제로 불거지고 나면 중국도 쉽게 넘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왜 우리가 나서서 미리부터 몸값을 올려주려 하는지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환상의 섬’ 이어도는 선거 정국에서 국내 보수여론에 휘말려 독도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시아투데이 [2012.03.13] 이어도 갈등 고조, 韓中 ‘해양경계 획정 회담’ 재개 무드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한·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중단된 양국간의 ‘해양경계 획정 회담’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2일 장신썩(??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이어도 문제는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EEZ 경계 획정 회담을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중국측에 요구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도 같은 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쑤옌자오(이어도)의 귀속 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3일 “해양경계 획정 회담의 재개 분위기는 조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장급 회담이 올해 상반기에 있을 것’이라고 보도됐는데 아직 양국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양국 모두 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실무 협상 테이블은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1996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후 16차례의 공식적인 국장급 회담을 갖고 이어도 관할권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그러나 2009년 중국 외교부가 국경 획정과 해양 분쟁과 관련한 외교정책을 입안·조정하는 ‘변계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국경해양국)’를 설치한 후 공식 회담은 중단된 상태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2009년에 이 문제를 담당해오던 중국 외교부 담당 부서가 독립해 ‘변계해양사무사’로 승격되는 조직 개편이 있었다”며 “중국 측의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회담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회담은 중단됐지만 2009년, 2010년 두차례에 걸쳐 비공식 회담을 가진 바 있다”며 “올해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갖자고 중국에 제안했고, 중국 측도 급한 상황인만큼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경향신문 [2012.03.16] 중 “이어도는 해양경계 문제, 곧 회담 갖자”

중국 정부가 ‘이어도는 중국 관할구역’이라는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의 발언을 두고 “기술적 사항을 설명하며 나온 발언일 뿐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14일 베이징 한국대사관을 통해 지난 3일 류 국가해양국장의 발언이 단순히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문제에 관해 중국 측 입장을 강화한다거나, 다른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며 “이어도가 해양경계 획정의 문제라는 부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속히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피력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도 최대한 빨리 경계 획정 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다만 “이어도가 우리 측에 워낙 가깝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이전이라도 우리 수역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4월쯤 외교부 과장급 실무자가 베이징을 방문해 실무 조율을 한 뒤 상반기 중 3년 이상 중단된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어떤 국가도 바닷속에 있는 바위를 영토로 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이어도 주변 해역 대륙붕의 자원 개발권 등을 의식해 이어도를

자국 EEZ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신경전을 벌여왔다. EEZ는 보통 영토에서 200해리 (370km) 이내 해역을 뜻하지만 한·중 간 바다는 그만큼 넓지 않아 양측 합의로 경계 선을 그어야 한다.

▶ 동아일보 [2012.03.16] “한국 EEZ조업허가증은 로또”... 中어선, 수천만원에 불법매매

■ 정부, 한달새 8건 적발

중국에서 서류상 존재하는 ‘유령 어선’이 한국 측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허가증을 불법으로 받아 되파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말 해경 특공대원을 흥기로 찢러 살해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선장도 거액을 주고 이렇게 팔리는 조업허가증을 매입해 조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허가증을 사느라 쓴 돈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 불법 거래 한 달 새 8건 적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달 들어 우리 정부가 발급해준 EEZ 조업허가증을 중국에서 매매, 임대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8척을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어업지도선 무궁화 31호는 13일 오후 3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67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루룽위(魯榮漁) A, B호를 붙잡았다. 이 2척은 각각 176t급이며 함께 조업을 하는 쌍타망(雙拖網·쌍끌이 저인망)이었다.

루룽위 A, B호는 농식품부가 발행한 조업허가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박 길이나 폭 등이 조업허가증에 기재된 것과 달랐다. 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실제로는 루룽위 C, D호였다. 루룽위 C호 선장(31)은 “중국 현지에서 진짜 조업허가증을 샀지만 구입 경로나 가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무궁화 8호는 같은 날 오전 8시경 홍도 남서쪽 122km 해상에서 루창위(魯昌漁) A, B호를 붙잡았다. 145t급으로 쌍타망인 이 2척도 조업허가증을 사 불법 조업에 나섰다. 이 어선들은 허가를 받은 선박이름과 동일하게 위장했지만 선박재원까지 속일

수는 없었던 것.

○ 어선 5만척 허가증 발급 대기

중국에서 조업허가증 매매, 임대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위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11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한 뒤 2개월 동안 발행한 조업허가증에는 홀로그램이 인쇄돼 있다. 또 EEZ 내에서 조업을 하다 조업일지 부실기재, 어획량 축소기재 등으로 적발되면 전과가 기록돼 조업허가증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1년 기간 조업허가증은 해마다 기존 허가 어선에 우선 배정된다. 불법 조업으로 신청자격이 없어진 어선의 허가증은 대기하고 있는 중국 어선 5만 척에 배정된다.

이에 조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 중국 어선 등이 로또라 불리는 조업허가증을 받게 되면 불법 조업 어선에 허가증을 팔게 된다. 허가증 임대 가격은 유자망 1800만 원, 쌍타망 3600만 원 수준이며 매매 가격은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조업허가증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청호 경사를 흥기로 찢러 살해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선장(43·구속)도 ‘조업허가증을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현지에서는 ‘조업허가증을 사면 권리를 인정받는다. 더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조업허가증을 거액을 주고 구입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은 투자금을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국민일보 [2012.04.18] 이어도 해양경계 협상, 한국에 유리

중국이 최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벥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을 판결했다.

재판소는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이웃하는 두 국가의 연

안을 따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잠정 중간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첫 사례다. 잠정중간선 원칙은 마주하는 두 국가의 연안 가운데를 선으로 그어 경계를 잠정획정한 뒤 제반 사정을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어도가 중국 본토의 대륙붕 선상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중간선 원칙을 내세웠다.

▶ 동아일보 [2012.04.19]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경계 기준은 중간선” 첫 판결…  
‘이어도 관할권’ 한국에 유리해져

중국이 최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 만 해역에서의 경계선을 두 나라의 중간선으로 결정했다. 인도양 동북부의 벵골 만 해역은 해저유전 개발을 놓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관할권 분쟁이 격화된 곳이다.

벵골 만 해역 관할권 문제는 해양법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판결 결과에 국제적 관심이 높았다. 해양법재판소가 그동안 다른 국제법원들이 판례를 통해 형성해 놓은 해양경계획정 방법론을 어디까지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재판소는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이웃하는 두 국가의 연안을 따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과 같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때 ‘중간선 원칙’을 내세워 온 것과 일치한다.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81해리(약 149km), 중국 최동단 퉁다오(童島) 섬에서 133해리(약 247km)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해역에 속

하게 된다.

반면 중국은 서해에서 중국 대륙의 자연연장 부분까지가 자국의 해역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어도는 바로 중국 본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수를 고려해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판결에서 그 같은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 국민일보 [2012.05.01] 끊이지 않는 불법 조업 中 어선 흥기 난동 왜... 말로만 그친 정부 대책, 시늬도 안하는 中 재발방지 교육

갈수록 흉포화되는 중국 선원들의 공격에 공권력이 잇달아 무너지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선원들이 ‘죽기 살기 식’으로 무차별적 대응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은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9월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인천해경 이평호 경사도 유사한 사안으로 사망하자 정부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교적 대응’ ‘단속의 실효성 강화’ ‘단속·감시·처벌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차원에서 단속함정 증척, 진압장비와 인력확충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수부대출신을 해경 기동대원으로 특채하는 인력확충안과 기동대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총기사용 및 행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확충 등은 말뿐 달라진 것이 사실상 거의 없다. 이번에 단속 공무원 부상 사건이 발생한 서해어업관리단의 경우 17명의 인력 증원이 계획됐으나 오리무중이다. 흥기를 피할 수 있는 방검복 확충도 요원해 단속 선박 1척당 달랑 4벌이 전부다. 제주 마라도에서 인천 백령도까지 서해바다 2000여km를 지키는 1000t급 이상 대형함정은 8척에 불과하다.

서해어업관리단의 사정은 더 열악해 서해바다를 지키는 15척의 지도선에 승선한 인원은 불과 210명이다. 단속과정에서도 지도선에 잔류해야 하는 최소인원을 제외하면

7~9명의 공무원이 흥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맞서는 중국선원을 제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단속 과정에서 다친 서해관리단 공무원만도 7명에 이르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우리 바다를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소한 장수에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외교 대응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10~12일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 농업부 어업지휘중심처와 지도단속회의를 개최해 집단적·폭력적 행위에 항의하고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중국 측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불과 20일 만에 같은 사고가 재발됐다.

국회도 대책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국회가 지난해 말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중국어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은 총선 후 18대 국회가 사실상 생명을 다하면서 곧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 국민일보 [2012.05.01] 또 짚린 ‘해양주권’... 中어선 흥기에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 4명 중경상 입어

중국어선에 또 당했다.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우리 공권력에 대항해 또다시 흥기를 휘둘렀다. 단속공무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30일 불법조업 단속공무원들에게 흥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던 중국 어획물 운반선 227t급 절옥어운호를 나포하고 선장과 선원 등 9명을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중국 선원들은 이날 오전 2시30분쯤 신안군 흑산면 흥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단속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항해사 김정수(44)씨 등 3명에게 칼, 낫 등의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판원 화정우(32)씨는 바다에 추락했으나 다행히 구조됐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이 정식 허가받은 어선이지만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단속에 폭력적으로 대응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 운반선이 중국어선으로부터 생선을 받아 중국으로 실고 가기 위해 영해를 넘

어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우리 정부가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같은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해경 소속 이청호 경사가 EEZ을 침범한 중국어선에 승선해 단속을 벌이다 선장 청모(42)씨의 흥기에 찢려 순직했다. 2008년 9월엔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사고 직후 당국 간 핫라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중국 측에 전했다"며 "1일 오전 10시쯤 주한 중국 총영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2012.05.01] 불법조업 中선원, 맹견 풀고 손도끼-칼 휘두르는데...  
방검복 없어 구명조끼만 입고 싸웠다

30일 오전 1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북쪽 56km 해상.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호(1000t)가 중국 어획물 운반선 저위위원(浙玉漁運) 581호(227t)를 발견했다. 이들 전부터 중국어선 20여 척이 선단을 이뤄 조업을 하자 신고 어획량을 속였을 것이라고 판단해 운반선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위위원 581호가 나타나자 조사에 나섰다.

고속보트 1척에 항해사 김모 씨(44), 항해원 화모 씨(32) 등 단속반원 6명이 승선했다. 무궁화 2호에 실린 고속보트는 1t으로 해경 고속단정(2t)에 비해 작아 최대 6명만 탈 수 있다. 김 씨 등은 25노트인 고속보트를 타고 이날 오전 2시 15분경 불이 꺼진 저위위원 581호 선체 왼쪽 중간에 도착했다. 김 씨 등 5명은 저위위원 581호로 올라갔고 단속반원인 또 다른 김모 씨(41)는 고속보트를 지켰다.

김 씨 등이 저위위원 581호에 올라가 먼저 기관실에서 엔진을 꺼 선박을 정지시켰다. 무궁화 2호의 추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후 조타실 문을 걸어 잠근 선장 왕모 씨(37)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타실 왼쪽 입구에는 맹견이 풀려 있었고 오른쪽 입구에는 철조망으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단속반원들이

승선할 것을 대비해 폭력으로 저항하려고 미리 준비했다는 분석이다. 김 씨 등이 조타실에 진입하려는 순간 왕 씨 등 선원 9명은 손도끼와 칼, 갈고리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들은 곧바로 기관실을 점거해 엔진을 다시 가동해 도주를 시작했다.

항해원 화 씨는 중국 선원 왕 씨 등이 석탄 덩어리를 던지며 흥기를 휘두르자 3단봉으로 1명을 제압했다. 중국 선원 1명이 갈고리를 휘두르며 접근하자 방검복 없이 구명복만 입고 있던 화 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피하다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다. 직원 16명이 탄 무궁화 2호에는 올 초 방검복 8벌이 지급됐는데 단속반원 11명 중 3명은 방검복이 없었다. 현재 서해어업관리단 단속반원 210명에게 지급된 방검복은 107벌뿐이다.

화 씨는 바다에 추락한 지 15분 만인 이날 오전 2시 35분경 긴급 출동한 무궁화 2호의 다른 고속보트에 의해 구조됐다. 화 씨는 “구명복에 있던 랜턴으로 위치를 알려 구조될 수 있었다”며 “해경처럼 구명복에 위치추적 장치가 장착돼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해사 김 씨는 중국 선원들과 몸싸움을 하다 헬멧이 벗겨졌고 그 순간 누군가 손도끼로 김 씨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해 부상을 입고, 조모 씨(43) 등 2명은 찰과상을 입었다. 고속보트 2척에 탄 단속반원들은 이날 오전 2시 50분경 무궁화 2호로 모두 철수했다.

고속보트 단속반원들이 저위위원 581호 선원 9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모선인 무궁화 2호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다. 무궁화 2호가 지원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쉬움 그 자체다. 서해어업관리단의 주력 단속선인 무궁화 2호의 속력은 9노트에 불과했다. 32년 전 처음 배치될 때는 15노트까지 속력을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됐다. 하지만 최고 12노트인 저위위원 581호는 빠르게 도주했다. 고속보트가 첫 승선조사를 실시할 때 무궁화 2호와 저위위원 581호의 거리는 3km였다. 추격전이 시작되자 두 선박의 거리는 30분 만에 6~7km로 벌어졌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의 평균 운항연도는 15년으로 대부분 노후화됐고 평균 속력도 15노트 수준이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은 평균 11노트의 속력을 낸다. 그러나 도주 과정에서 엔진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아난다. 저위위원

581호도 평균 속력이 7노트이지만 도주 과정에서는 12노트로 달아났다. 목숨을 걸고 도주하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쫓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단속반원들은 모선인 무궁화 2호처럼 평균 속도 이하인 어업지도선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따라잡지 못하면 고립무원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5척에는 직원 2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단속반원의 장비도 3단봉이나 가스충격기가 고작이다. 정부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직원 17명을 충원하기로 한 계획을 예산 부족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고 이청호 경사가 숨지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8대 국회가 생명을 다하면서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전남 목포해경은 단속원을 공격한 뒤 중국 쪽으로 달아나던 저위위원 581호를 2시간 추격해 이날 오전 4시 45분경 신안군 홍도 서북쪽 76km 해상에서 나포해 선장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방검복(防劍服)과 구명복 ::

방검복은 칼 등에 찔리거나 뚫리지 않도록 특수강으로 제조한 옷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벌에 63만 원인 방검복 107벌을 단속반 대원에게 지급했다. 구명복(조끼)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몸을 뜨게 하는 역할만 있고 흥기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은 없다. 구명복은 1벌에 10만 원 수준이다.

### ▶ 동아일보 [2012.05.01] 정부 中에 항의... 불법조업 재발방지 촉구

정부는 30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들이 휘두른 흥기에 한국 단속요원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중국 측에 중국 어민들의 계도를 포함한 여러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등 외교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청호 경장의 순직 사건 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내심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도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단속도 강화했지만 중국어선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사건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중순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한중 어업지도 단속회의’를 열고 불법조업 어선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한국 측의 단속 방식과 강도를 문제 삼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자국의 허가조차 받지 않는 어선의 단속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2012.05.22] 태안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홀동안 6척 ‘나포’

우리 해역에서 불법어업활동을 벌인 중국선적 어선을 우리 해양경찰이 나포해 압송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태안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9시경 제한조건 위반으로 중국어선 요영어호(유망, 74톤) 등 2척을 연이어 나포하는 등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홀동안 총 6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경 요영어호(74톤) 등 중국선적의 어선 2척이 격렬비열도 남서방 65마일해상에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제한조건을 위반해 태안해경 광역 경비함에서 검거 조사중에 있다. 이에 앞서 태안해경은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제한조건위반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하여 담보금을 받고 석방한 바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빈틈없는 경비태세로 우리 해역내 어족자원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2012.06.27] ‘中 불법조업’ 논의… 한·중 외교당국 협의 정례화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하는 한·중 외교당국 간 협의회가 정례화된다. 외교통상부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어업협력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양국 외교·어업·해상치안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불법조업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외교당국 간 대화채널인 한·중 어업협력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 어선 수나 어획할당량 등 수산당국 차원의 회의에 그쳤다. 불법조업 문제는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이나 외교당국이 개입하곤 해 사전 예방보다 ‘사후약방문’에 가까웠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조업질서 확립 및 양국 관계를 감안할 때 외교적 차원의 실무 협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주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양국 간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에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외교부 다른 관계자는 “수산당국 차원의 협의와 별도로 외교당국 간 대화채널이 가동되면 불법조업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어업협력협의회 정례화 외에도 다양한 조업질서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가 중국 측에 불법조업 어선 단속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조언키로 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한·일 간 불법조업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우리 정부와 매우 흡사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는 일본이 한국의 불법조업으로 골치를 썩었다”며 “우리 정부가 불법조업을 줄이기 위해 어민 관리에 사용했던 지원정책 노하우를 중국 측에 귀띔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지난해 12월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의 칼에 사망한 뒤 양국 외교문제로 확대됐다. 양국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어업 분야 소통과 협력을 증진 시키기로 합의했다.

#### ▶ 서울신문 [2012.06.27] 한·중 불법조업 핫라인 구축

한국과 중국은 26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어업문제 협력 회의’를 열어 양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련 회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외교당국 간 어업 회의는 처음 있는 일로 지난해 12월 중국의 불법조업 사건 후 우리 측이 이 문제를 외교당국 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을 중국 측이 수용해 이뤄졌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어업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됐으며 양국 어업 분야 관계부처 공무원 간 교류 확대 및 유사시 양국 관계기관 간 소통체제 강화 등을 포함한 건강한 어업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양측은 앞으로도 이번 회의와 같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기 회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물론 건설적인 상호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 동아일보 [2012.07.17] “한중FTA서 서해 불법조업문제 제기”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중국에 서해 불법조업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중국 해산물은 자국 영토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앞세워 FTA 협상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김종진 농림수산물식품부 통상정책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때 불법어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정부가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어업지도단속 실무협의회, 수산고위급회담 등의 채널을 통해 다루졌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지역화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중국이 지역화 논리로 한국을 압박해 오겠지만 우리는 국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화’란 동식물 위생관리 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단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 내 A지역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도 수천 km 떨어진 중국 B지역의 돼지 수입은 허용한다는 뜻이다.